

새희망 미래도시, 명품북구

# 울산광역시 북구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

울산광역시 북구

# 울산광역시 북구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## □ 기획예산실 -1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   | - 신규시책, 제도개선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    | 법 제9조제1항 제5호           | - 각종 신규시책,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직관리            | - 조직개편, 직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| 법 제9조제1항 제5호           | - 조직개편, 직제관리 등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 검토·협의·결정 등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성을 저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민·공무원 제안       | - 구민·공무원 제안서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 |
| 구민·공무원 제안       | - 구민·공무원 제안심사·채점결과            | 법 제9조제1항 제5,6호         | -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진되는 각종심사 사항<br>-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 |
| 구민·공무원 제안       | - 구민·공무원제안 심사안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제1항 제5,6호         | -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시 업무에 지장 초래<br>-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 |
| 위원회 관련 정보       | - 진행중인 회의록 기재발언 및 심리진행 사항     | 법 제9조제1항 제5호           | -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및 소신 있는 의견 개진이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산편성 요구중인 자료    | -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 조서         | 법 제9조제1항 제5호           | - 예산의 공정한 심의 및 편성 애로, 각종 이익단체, 이해관계업체 등의 개입 우려, 확정되지 않은 자료가 알려질 경우 상당한 혼란 가중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송 (행정소송, 민사소송) | - 재판에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 자료 등 | 법 제9조제1항 제4호           | - 행정·민사소송과 관련된 소장, 소송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,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계              | - 통계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| 통계법 제30조 제3항, 제31조 제4항 | - 「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계법 제27조 제3항 제1호       | -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계법 제33조               | - 「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」 |

□ 기획예산실 -2

| 비공개 대상 정보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|  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공무원 범죄통보  | - 공무원 범죄통보 처리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           |
| 공직자재산등록   | - 공직자재산등록 심사, 처리<br>-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서류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1호 | - 「공직자윤리법」제10조 등록재산 공개대상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는 비공개대상 |
| 부조리신고센터   | - 부조리신고센터 처리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 등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                |
| 비위조사 처리   | -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사항(조사내용, 내부검토사항, 관련공무원조치 결과)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           |
| 징계의결 요구   | -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사항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           |

□ 경제일자리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|   | 비공개 근거        | 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| 세부목록  | 법률근거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고압가스 관리   | -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규정의 인·허가 신청서류 중 신청인 인적사항 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신청서, 신고서에는 개인정보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|
| 석유사업 관리   | - 「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규정의 인·허가 신청서류 중 신청인 인적사항 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신청서, 신고서에는 개인정보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|
| 공공근로사업    | - 공공근로참여자 근무상황, 보수, 인적사항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공공근로참여자 개인(이름, 주민번호, 급여, 계좌번호)에 관한 사항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|
| 공장관리      |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규정의 인·허가 신청서류 중 신청인 인적사항 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신청서, 신고서에는 개인정보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|
| 과태료관리     | - 과태료부과, 과태료 납부독촉, 압류등록, 해제 촉탁, 체납자 내역 자료 중 인적사항 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과태료 관련 자료에는 개인정보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노동조합 관리   | -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규정의 인·허가 신청서류 중 신청인 인적사항 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신청서, 신고서에는 개인정보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|
| 담배소매업 관리  | -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규정의 신청서류 중 신청인 인적사항 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신청서, 신고서에는 개인정보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|

□ 미디어정보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| 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| 세부목록  | 법률근거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비밀·보안<br>관련정보 | - 비밀문서 및 보안관련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2호 | -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 |
| 개인신상관리        | - 개인신상명세서, 봉급 및<br>수당자료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,<br>가족사항, 급여 및 수당 내역 등)으로<br>사생활 침해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무상황관리        | -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관한<br>정보 중 연차휴가, 병가휴가,<br>특별휴가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| -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정보 중<br>연차휴가, 병가휴가, 특별휴가 등에 관한<br>자료는 공개될 경우 해당 직원의<br>건강상태나 사생활 등이 노출될 우려가<br>있음 |
| 민원사무처리        | - 민원신청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<br>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|

□ 문화체육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관리     | - 영화상영관등록·변경 신청서<br>- 영화상영신고<br>- 공연장등록·변경 신청서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개인의 신상·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비디오물 관리            | - 비디오물 영업 신고·변경 등 민원서류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개인의 신상·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출판인쇄업관리            | - 출판·인쇄사 신고·변경 등 민원서류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개인의 신상·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게임 및 음악산업 관리       | - 게임·음악산업 영업허가 (신고, 등록)·변경 등 민원서류<br>-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심판 관련 서류 | 법 제9조 제1항 제4호, 제6호 | -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·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<br>- 개인의 신상·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|
| 지방문화재 보존관리         | - 국가(시지정)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<br>- 천연기념물 조난<br>- 동물 치료결과보고서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개인의 신상·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정보 | - 체육시설업자 신상정보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개인의 신상·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
□ 관광진흥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근거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정 보 명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위원회 관련 정보         | - 각종 위원 명단 중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문서들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위원회 관련 정보         | - 회의록<br>- 심의 결과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광사업 등록 및 등록변경 정보 | - 관광사업자 신상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의 신상·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   | -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자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간제 관리            | -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에 관련 서류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농수산과-1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위원회<br>관련정보           | - 위원회 관련 정보(정책심의회<br>참석자의 비밀준수 의무)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5호     | - 회의 내용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농정의<br>투명성과 선의의 피해 우려가 있어<br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br>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함   |
| 충무계획                  | - 충무계획 업무전반<br>(농림사업실시계획,<br>해양수산사업실시계획)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2호     | - 충무계획에 대한 업무 전반 관련 자료는<br>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<br>우려   |
| 기간제근로자<br>운영          | - 근로계약서 및 관리카드,<br>인부임 지급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이름, 생년월일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<br>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<br>우려   |
| 농어촌민박<br>사업자 신고       | -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규 신고<br>- 농어촌민박 사업자 변경·폐업<br>신고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개인 주소, 연락처를 사업장으로<br>이용하는 영세업자의 경우 전화번호<br>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<br>우려가 있음   |
| 보조사업<br>대상자선정         | - 농수산분야 보조사업 대상자<br>선정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이름, 생년월일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<br>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<br>우려   |
| 농수산 재해<br>관련업무        | -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<br>신상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이름, 생년월일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<br>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<br>우려   |
| 어선 등록,<br>변경 등록       | -어선 등록 업무<br>-어선 변경 등록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<br>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<br>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|
| 수산물<br>원산지<br>지도점검    | - 대형마트 및 소매점 등<br>수산물원산지 거짓표시 및<br>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        | 법 9조 제1항<br>제4호, 제6호 | -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<br>행정심판·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개될<br>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<br>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<br>- 관련업소 대표자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<br>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<br>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<br>우려가 있음 |
| 내수면<br>불법어업행위<br>지도점검 | -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행위에<br>대한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<br>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<br>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|
| 불법어업행위<br>지도점검        | - 무허가 및 허가 외 조업에<br>대한 행정처분<br>- 수산자원 불법 포획, 유통 및<br>판매 단속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<br>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<br>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|



□ 농수산과-2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축산업, 가축인공수정소 허가·등록 신고 및 지도점검 | - 축산업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치립업 및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 및 행정처분<br>- 가축거래상인 등록,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 및 행정처분  | 법 제9조 제1항 제5, 6, 7호 | - 인·허가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br>-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<br>- 아울러 단속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처분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|
| 초지조성, 전용 허가 및 실태조사 관리        | - 초지조성, 전용의 허가 및 용도변경<br>- 초지 실태조사 및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  | 법 제9조 제1항 제5, 6, 7호 | -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<br>- 인·허가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|
| 축산물 위생관리 허가·신고 및 지도점검        | -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 보관업·운반업·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허가·신고<br>- 상기 업종에 대한 위생점검, 출입(수거)검사 및 행정처분<br>-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 | 법 제9조 제1항 제5, 6, 7호 | -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br>-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<br>- 아울러 단속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처분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      |
| 수의사 관리, 동물병원 등 개설신고 및 지도점검   | - 동물병원 개설신고<br>-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·운영 관련 신고<br>- 공수의 위촉 및 운영<br>- 수의사, 동물병원(동물진료업)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행정처분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, 6, 7호 | -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br>-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<br>- 아울러 단속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처분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      |
| 동물약국 개설등록·신고 및 동물용의약품 지도점검   | - 동물약국 개설 등록·신고<br>-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동물용의약품기기판매업 등 신고<br>- 동물용의약품 관련 점검<br>- 출입(수거)검사 및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, 6, 7호 | - 인·허가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br>-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<br>- 아울러 단속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처분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|
| 동물등록 및 동물 관련 영업 허가·등록 신고     | - 동물등록 신청(변경신고)<br>- 동물생산업 허가<br>- 동물장묘업·판매업·수입업·전시업·위탁관리업·미용업·운송업 등록<br>- 동물보호센터 지정<br>-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| 법 제9조 제1항 제5, 6, 7호 | -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br>-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<br>- 아울러 단속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처분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      |
| 공중방역수의사 인사관리                 | - 공중방역수의사 인사관리부, 배치 및 급여 등에 관한 사항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| -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|

□ 총무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| 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공무원 인사 관련         | - 공무원 인사기록 관련<br>- 정기 및 수시인사 계획<br>- 공무원 인사교류 계획<br>-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<br>-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, 제6호                  | -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<br>- 개인정보 보호 |
| 공무원 신분관리          | - 인사위원회 관련 서류<br>- 징계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, 제6호                  | -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<br>- 개인정보 보호 |
| 공무원 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 | - 승진 심사 계획, 회의록 등<br>- 근무성적평정서, 감점명부, 평정단위 서열명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1호, 제6호 (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) | - 개인정보 보호<br>-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거 비공개로 규정       |
| 공무원 노조 관련정보       | - 공무원노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<br>-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 중 부서별 협상관련 사항<br>-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| -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     |
| 상근인력 노사협의회 등 운영정보 | -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| -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     |
| 급여                | - 보수 및 수당 지급내역<br>- 연말정산 자료 등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정보 보호  |
| 상근인력 등 개인정보       | - 상근인력 등의 주민등록번호, 통장계좌번호, 급여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정보 보호  |

□ 주민자치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  | 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각종 단체<br>관련정보             | - 단체 회원 명단 중 성명, 주민<br>등록번호 등 개인의 인적사항<br>에 관한 사항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<br>침해 우려   |
| 과거사 진상규명<br>관련정보          | - 신청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<br>등 개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<br>침해 우려   |
| 민주화운동<br>관련정보             | - 신청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<br>등 개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<br>침해 우려   |
| 보상금 지급에<br>관한 정보          | -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불만족<br>당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<br>침해 우려   |
| 북한이탈주민                    | -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<br>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3호      | - 국민의 생명, 신체 등 공공안전 및<br>이익에 불이익 우려  |
| 일제강점하<br>강제동원 피해자<br>관련정보 | - 피해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<br>등 개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<br>침해 우려   |
| 주민등록                      | - 주민등록 관련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3호, 제6호 | - 주민등록 관련 자료는 공개될 경우<br>위·변조 등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<br>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<br>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른<br>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<br>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구청장에게<br>바란다<br>민원접수      | -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<br>주소 등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|
| 민원접수                      | - 진정·고충민원<br>- 개인정보 포함된 민원사무처리<br>자료 일체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<br>주소 등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|

□ 회계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|   | 비공개 근거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|
| 정 보 명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계약        | - 입찰계약관련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입찰계약·기술개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   |
| 용역수행정보    | - 용역수행민간업체 제출서류, 기존기술,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 법 제9조 제1항 제7호 | -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|
| 공유재산 관리   | - 대부관련서류<br>- 변상금관련서류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·공유재산 매각 | - 매각 및 관리계획 관련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회의실 사용   | - 신청서<br>- 취소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 기재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                |

□ 세무1과 -1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 체결 | - 과년도 평잔액 이자율,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수익 및 그 운용현황, 금고취급 약정서(계약서), 기부금 현황 자료 |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          | - 법인의 경영,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 |
| 구세일반              | -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의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          | -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       | - 정기분·수시분 부과자료   | 법 제9조 제1항 제1호, 지방세기본법 제86조 | - 등록면허세 정기·수시분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거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공개함       |
| 세무조사              | - 법인 경영, 영업상 과세누락 등 세무 조사 자료전반, 대형 건설법인 경영, 영업상 자료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          | - 법인의 경영,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 |
|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     | 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자료,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          | -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의신청, 심사청구, 행정소송  | - 재판에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 자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           | - 재판에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 자료 등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 |
| 자동차세 부과징수         | - 과세대장 변동자료, 정비자료  | 법 제9조 제1항 제1호, 지방세기본법 제86조 | -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거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공개함             |
| 재산세 부과징수          | - 과세대장 정비자료 부과자료   | 법 제9조 제1항 제1호, 지방세기본법 제86조 | -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거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공개함.             |

□ 세무1과 -2

| 비공개 대상 정보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정 보 명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재산조회      | - 재산조회 회신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3호, 지방세기본법 제86조 | - 재산조회 회신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거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자료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,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|
| 주민세 부과징수  | -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후 미납분 수사부과, 미신고건 수사부과 자료 | 법 제9조 제1항 제1호, 지방세기본법 제86조 | -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후 미납분·미신고건 수사부과 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거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공개함                 |
| 지방세감면처리   | - 비과세, 감면신청 및 결정 자료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1호, 지방세기본법 제86조 | - 지방세 비과세, 감면을 위한 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거 비밀유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공개함.                        |
| 취득세 부과징수  | - 취득 신고 후 미납분 수사부과 자료, 취득세 미신고건 수사부과자료 | 법 제9조 제1항 제1호, 지방세기본법 제86조 | - 취득 신고 후 미납분·미신고건 수사부과 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거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공개함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세무2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체납자 재산<br>압류관련 정보 | - 체납자재산 및 주소조회<br>- 재산압류 등록 및 해제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  |
| 체납세<br>조회회신       | - 체납세 조회 회신자료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3호,<br>지방세법 제69조      | - 체납세 조회 회신자료는 지방세법<br>제69조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<br>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<br>자료제공이 규정되어 있으나, 공개될<br>경우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<br>지장을 초래할 우려 |
| 주민세<br>부과징수       | - 개인분, 종업원분 주민세 등<br>부과자료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1호,<br>지방세기본법<br>제86조 | - 주민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는 지<br>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거 비공개로 규<br>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<br>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<br>공개함                   |
| 지방소득세<br>부과징수     | - 지방소득세(법인, 개인, 양도,<br>특별징수) 부과자료 | 법 제9조 제1항<br>제1호,<br>지방세기본법<br>제86조 | -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는<br>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거 비공개로<br>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<br>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<br>비공개함                     |
| 등록면허세<br>부과징수     | - 정기분·수시분 부과자료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1호,<br>지방세기본법<br>제86조 | - 등록면허세 정기·수시분 부과에 따른<br>과세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<br>거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<br>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<br>호에 의거 비공개함              |

□ 민원지적과 - 1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민원접수<br>민원상담            | - 법정서식 민원 전반<br>(단순, 복합민원 등)<br>- 개인정보 포함된<br>민원사무처리 자료 일체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민원사무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정보 포함된<br>민원사무처리 자료 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개인의 신상 및 주소 연락처 기재로<br>인한 비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민등록관리                  | - 주민등록 등·초본<br>교부신청서 및 위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4호, 6호 | - 개인의 신상 및 주소 연락처 기재로<br>인한 비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감증명                    | - 인감증명발급대장<br>- 인감증명발급위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개인의 신상 및 주소 연락처 기재로<br>인한 비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외국인등록일반                 | - 체류지변경신청서<br>- 외국인사실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개인의 신상 및 주소 연락처 기재로<br>인한 비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출입국사실조회                 | - 출입국사실증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개인의 신상 및 주소 연락처 기재로<br>인한 비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결격사유조회                  | - 수형인명표, 파산선고,<br>후견등기 관련 자료<br>- 결격사유조회 및 회보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4호, 6호 | - 재판관련정보 및 개인정보   |
| 가족관계등록<br>업무            | -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서<br>- 가족관계등록관련 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4호, 6호 | - 재판관련정보 및 개인정보   |
| 인구통계                    | - 인구동향조사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1호, 6호 | - 법령상 비공개 정보 및 개인정보   |
| 일반여권 발급                 | - 여권발급신청서<br>- 여권발급 정보<br>- 여권발급 기록조회에 관한<br>사항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개인정보보호<br>-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원회 관련<br>회의록 및<br>신상정보 | - 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<br>개인정보 관련자료 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5호, 6호 | -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<br>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<br>지장 초래<br>- 개인정보보호 |
| 행정소송 및<br>행정처분자료        | - 행정심판·소송관련자료 일체<br>- 행정처분·고발관련서류 일체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4호, 6호 | - 직무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을<br>초래하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<br>우려<br>- 개인정보보호       |
| 표창상인에 따른<br>개인신상정보      | - 표창상신 및 추천서<br>- 공적조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개인정보보호  |
| 민원신청서                   | - 법정 서식민원 전반<br>(진정, 건의, 요청, 탄원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개인정보보호  |
| 지리(지적)정보                | - 지적전산자료(도면, 대장)<br>파일<br>- 새주소 도면 파일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2호     | -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 |



□ 민원지적과 -2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부동산등기용<br>등록번호<br>부여·변경·발급       | -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<br>관련자료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신고포상금<br>관련서류                    | -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<br>신고포상금 관련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5호, 제6호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미등기<br>토지소유자<br>주소등록             | -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정정<br>신청서 및 관련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개별공시지가<br>관련                     | - 개별공시지가<br>토지특성조사표,<br>개별공시지가 산정·결정조서<br>- 토지가격비준표,<br>검증결과보고서 | 법 제9조 제1항<br>제5호, 제8호 | -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<br>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토지소유자 관련자료,<br>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,<br>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부동산가격공시<br>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| - 위원 개인정보 관련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회의록, 심의관련서류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5호      | -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<br>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               |
| 기간제근로자<br>운영                     | - 근로계약서 및 관리카드,<br>조사원임금 지급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토지거래<br>계약허가                     | - 허가대상자 인적사항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부동산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중개업소 지도점검관련 자료,<br>신원조회 요청 및 회보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5호, 제6호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부동산실명제<br>운영                     | -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<br>부과자료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부동산실거래<br>신고                     | -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<br>관련자료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부동산계약서<br>검인                     | - 부동산 계약서 검인 관련자료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외국인토지<br>취득신고                    | - 신고대상자 인적사항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부동산<br>거래신고에 관한<br>법률 위반<br>행정처분 | - 처분대상자 인적사항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개발부담금<br>산정·부과                   | - 납부의무자 인적사항 및<br>부과자료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<br>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<br>개인정보 유출 우려 |

□ 복지정책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| 비공개 사유  |
| 국가보훈대상자<br>관련 정보                 | - 국가보훈단체 회원명단<br>- 보훈명예수당 지급내역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|
| 사회복지시설<br>(법인) 관련                | - 종합사회복지관 자금 및 인사 등<br>위탁관리 사항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종합사회복지관 자금 및 인사 등 위탁관리<br>사항은 공개될 경우 적절한 내부관리 등을<br>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원봉사센터<br>운영                     | - 자원봉사센터 자금 및 인사 등에<br>관한 사항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적절한 내부관리 및 개인 사생활의 비밀<br>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|
| 저소득층<br>생활보호                     | -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소득,<br>재산 등 조사내역 및 결과<br>- 긴급지원대상자 조사내역<br>- 이웃돕기 지원대상자 명단<br>- 사례관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 | 법 제9조 제1항<br>제3호, 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소득 및 재산 내역은 생명, 신체 및 재산의<br>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<br>- 대상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<br>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|
| 코로나19<br>입원·격리자<br>생활지원비<br>지원사업 | -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<br>제출서류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<br>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<br>관한 법률 제74조 | - 개인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건강정보가<br>공개될 우려가 있음  |

□ 노인장애인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노인복지 증진시책수립 및 추진   | - 기초연금지급내역<br>- 노인복지시설 입퇴소<br>- 노인여가복지시설변경신고서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상 및 재산상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|
|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인허가    | - 정관 및 기본 재산 현황  |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  | - 노인복지관련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인적 구성 및 재산상황 공개시 법인 전반에 대한 권익 침해  |
| 자활지원               | - 지역자활센터 자금 및 인사관련 사항  |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  | - 지역자활센터 자금 및 인사관련 사항은 적절한 내부관리 등을 침해할 우려   |
| 장애인복지 증진 시책수립 및 추진 | -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내역<br>-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신청 관련자료<br>- 장애인시설신고민원서류<br>- 장애인시설종사자 및 입소자 정보<br>-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관련 자료<br>-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련자료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별 입금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상 및 재산상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<br>- 장애인시설의 민원처리 및 보조금지급 종사자 임면사항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|
| 저소득층 생활보호          | -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·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) 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| -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·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공개 함   |
| 저소득층 생활보호          | - 허위·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 |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   | - 허위·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자료는 공개될 경우 신고자들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안감을 주게 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비공개 함  |
| 저소득층 생활보호          | - 기초생활수급자 중 범죄이력 사항<br>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한 개인정보<br>-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보장중지 내역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수급자의 개인(이름, 주소, 주민번호, 범죄이력)에 관한 사항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<br>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개인(이름, 주소, 주민번호, 계좌번호)에 관한 사항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<br>- 수급자 및 저소득자의 개인(성명, 주소, 주민번호)에 관한 사항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
□ 가족정책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여성복지시설               | - 여성시설종사자명단, 개인정보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문서들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관리     | - 보육시설 인가·변경, 민원자료<br>-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<br>-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정보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문서들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    | 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문서들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  | - 명단, 개인정보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문서들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여성·아동복지 증진 시책수립 및 추진 | - 모·부자세대 가계지원비<br>- 학습보조비등 지급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문서들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  | - 명단, 개인정보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문서들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위원회 관련 정보            | - 각종 위원 명단 중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문서들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위원회 관련 정보            | - 회의록<br>- 심의 결과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 지도점검              | - 지도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교육청소년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근거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      | - 수강생 출석부<br>- 수강생 명단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자원봉사자 관리            | - 자원봉사자 가입 및 운영관련 서류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기간제 관리              | -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에 관련 서류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CCTV관리              | -통제구역(CCTV영상저장장치구역) 출입자 명부대장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    | -신청자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제3대학 강의 운영          | - 수강생 출석부<br>- 수강생 명단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청소년복지시설             | -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입소자 명단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정보 | - 유해업소 신고내역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위원회 관련 정보           | - 각종 위원 명단 중 이름,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위원회 관련 정보           | - 회의록<br>- 심의 결과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|
| 시설 지도점검             | - 지도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|

□ 안전총괄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민방위 관련           | - 지역민방위대편성 및 관리<br>- 직장민방위대편성 및 관리<br>- 통합민방위대구성<br>- 민방위지원대관리<br>- 민방위자원관리<br>- 민방위교육관리<br>- 민방위훈련관리<br>- 민방위동원관리<br>- 자원관리<br>- 중점업체 및 종사자관리<br>- 훈련관리 | 법 제9조 제1항 제2호, 제3호, 제6호 | - 민방위대 관련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보안업무규정 24조에 의거 비공개 함. |
|                  | - 과태료 관리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  |
| 사회복무요원 관련업무      | - 사회복무요원 신상, 급여<br>- 사회복무요원 개별 배치정보<br>- 각종 신청서 및 추천서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  |
| 위원회 관련 개인신상정보    | 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,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자료<br>-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자료(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  |
| 민간봉사단체 관련 개인신상정보 | - 지역자율방재단 명부 (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)<br>- 안전모니터봉사단, 자문단 명부 (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)<br>- 의용소방대 조직도 (연락처)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  |
| 각종 민원신청서 기재사항    | - 민원서류상 개인 또는 법인에 관한 사항(이름, 주민번호, 연락처 등)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  |
|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 | -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  |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  |
| 승강기 안전관리         | - 승강기 안전관리자, 관리주체 등 개인 인적사항 및 행정처분 사항 등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       | - 행정처분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이진 정보  |
|                  |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  |
| 풍수해보험            | - 풍수해보험 가입자 정보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|
| 자연재난 대책          | - 자연재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|

□ 건설과 -1

| 비공개 대상 정보  |   | 비공개 근거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| 세부목록  | 법률근거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개인신상관리     | - 개인신상명세서, 봉급 및 수당자료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, 가족사항, 급여 및 수당 내역 등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무상황관리     | -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정보 중 연차휴가, 병가휴가, 특별휴가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정보 중 연차휴가, 병가휴가, 특별휴가 등에 관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상태나 사생활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|
| 민원사무처리     | - 민원신청서류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|
| 비밀·보안 관련정보 | - 비밀문서 및 보안관련대장<br>- 비밀문서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<br>- 보안진단의 날 운영대장<br>- 비밀열람기록전<br>- 보안교육일지<br>- 비밀 및 대외비 문서<br>- 비밀취급인가자현황<br>- 암호자재현황<br>- 단말기 비밀보호(단말기 취급자)관리대장<br>- 대외비관리기록부<br>- 비밀관리기록부<br>- 전시개인별임무카드 | 법 제9조 제1항 제2호 | - 비밀 및 보안관련 업무전반 관련 자료는 업무 전반 관련 자료는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음                   |
| 비밀·보안 관련정보 | - 신용카드발급대장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누출 시 불법 활용 우려   |
| 비밀·보안 관련정보 | -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예산의 공정한 편성 애로   |
| 비밀·보안 관련정보 | - 우편물 발송정보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소) 및 우편물 발송 정보 공개시 사생활 침해 우려  |
| 비밀·보안 관련정보 | - 위원회 관련정보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 |
| 비밀·보안 관련정보 | - 위원회 일반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  |
| 비밀·보안 관련정보 | - 인사일반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  |
| 비밀·보안 관련정보 | - 일시사역 인부관련 정보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  |
| 비밀·보안 관련정보 | - 처리과 보안  | 법 제9조 제1항 제2호 | - 총무계획에 대한 관련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|
| 총무계획       | - 총무계획업무전반  | 법 제9조 제1항 제2호 | - 총무계획에 대한 업무 전반 관련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건설기계       | - 건설기계처분내역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|

□ 건설과 -2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골재채취허가        | - 골재채취업 등록업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  | - 법인 경영과 관련된 정보 누출 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       |
| 제한차량          | - 과적 및 제한운행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   | -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공유재산         | -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   |
| 도로보상          | - 행정 소송, 민사 소송, 보상협의서류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4호, 제3호 | -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,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  |
| 도로관리심의회       | - 회의록, 위원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  | -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및 위원들의 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|
| 도로점용허가        | - 도로점용허가자 개인신상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   |
| 전문건설업         | -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  | - 법인 경영과 관련된 정보 누출 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       |
| 지하수, 하천 점사용허가 | - 지하수 허가 신고<br>- 하천불법행위자 고발<br>- 하천점사용허가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개인에 관한 정보 유출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□ 도시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|              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개발제한구역<br>관리    | - 항공사진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3호, 제6호 | -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<br>우려가 있는 경우<br>-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<br>있는 경우<br>-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<br>인정되는 경우 |
| 개발제한구역<br>관리    | - 불법행위 행정처분 사항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<br>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|
| 기반시설부담금<br>부과관리 | -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내역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<br>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|
| 도시계획위원회<br>관련정보 | - 회의록, 위원명단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자유로운 의사발언을 제약할 수 있어<br>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및 개인정보<br>보호  |
| 경관위원회<br>관련정보   | - 회의록, 위원명단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자유로운 의사발언을 제약할 수 있어<br>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및 개인정보<br>보호  |
| 공공디자인<br>진흥위원회  | - 회의록, 위원명단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자유로운 의사발언을 제약할 수 있어<br>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및 개인정보<br>보호  |

□ 교통행정과 - 1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교통유발부담금<br>관련업무                       | - 압류등록 촉탁, 압류해제 촉탁<br>관련자료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부과된<br>부담금의 체납처분 관련 자료는<br>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<br>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| 사건송치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기소중지자<br>지명통보(지명수배)입력 및 해제<br>의뢰, 범죄경력 조회 및 해제<br>의뢰, 출석요구서, 범칙금<br>부과서류, 사건중결처리,<br>사건이첩 및 이송서류 | 법 제9조제1항<br>제4호, 제6호 | - 개인의 범죄정보 및 사건송치관련<br>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공개시<br>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<br>정보              |
| 유가보조금<br>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법인의 인적사항 및<br>법인정보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보조금 신청서류에는 신청자의 법인 및<br>개인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사생활의<br>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|
| 이륜차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이륜차등록, 변경, 말소관련<br>민원서류<br>- 등록대장, 말소대장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차 신고서의<br>인적사항 등은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<br>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동차<br>관리사업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법인의 인적사항 및<br>법인정보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시 개인(법인)에<br>관한 사항  |
| 자동차관리법위<br>반 관련업무                     | - 압류등록 촉탁, 압류해제 촉탁<br>관련자료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압류에 관련된<br>자료는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<br>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동차무단<br>방치자 및<br>의무보험미가입<br>운행자 통고처분 | - 범죄사건부, 사건송치부,<br>사건접수부, 재원증명서<br>발급의뢰, 출소증명서<br>발급의뢰(수감자조회이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제1항<br>제4호, 제6호 | - 개인의 범죄정보 및 사건송치관련<br>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공개시<br>인권침해의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동차손해배상<br>보장법관련업무                    | - 압류등록 촉탁, 압류해제 촉탁<br>관련자료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압류에 관련된<br>자료는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<br>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          |
| 주정차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의견진술 관련사항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개인(이름, 주소, 주민번호)에 관한 사항   |
| 주정차단속요원<br>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  | - 행정처분, 과태료 부과내역,<br>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,<br>단속요원근부상항부,<br>단속원복무사항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주정차 요원의 개인(이름, 주소,<br>주민번호)에 관한 사항  |
| 주정차위반<br>과태료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| - 부과(체납)자료<br>- 압류촉탁자료<br>- 압류해체촉탁자료<br>- 전세자금대상자 차량소유여부에<br>대한 회신<br>- 부과변경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관련된<br>자료는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<br>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차량무단<br>방치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자진처리안내문<br>- 자진처리명령서<br>- 자진처리공시송달<br>- 무단방치권리행사 공고<br>- 폐차(말소)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| -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무단방치처리 관련<br>자료는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<br>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교통행정과 -2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화물자동차<br>호가                | - 신청서 및 신규호가 신청자의<br>신원, 결격사유 조회정보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| - 운송사업 신청자에 관한 개인 사항(호주,<br>본적, 주소, 주민번호) 및 징역이상의<br>실형선고 내용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<br>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화물자동차<br>운송사업법에<br>따른 행정처분 | - 행정처분대상자의 처분내용 및<br>인적사항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| - 대상자의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정보와<br>처분내용에 관한 사항이 있어 사생활의<br>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|
| 화물자동차운수<br>사업              | - 화물자동차운송(주선, 가맹)사업<br>관련 정보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| - 운송사업자의 법인 및 개인(주(사무)소,<br>주민번호 등)에 관한 사항이 있어<br>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|

□ 건축주택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건축도면<br>관련정보    | - 건축허가 도면 중 평면도,<br>단면도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| - 개인정보 보호(개인재산 건축물의 내부<br>상황 노출)   |
| 건축행정<br>전산정보    | - 건축행정, 정책정보 시스템의<br>전산자료 중 개인신상 정보 및<br>관련도면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| - 개인정보 보호  |
| 위원회관련정보         | - 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개인정보<br>등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5호, 제6호         | - 자유로운 의사발언을 제약할 수 있어<br>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및<br>개인정보보호  |
| 특수공법<br>관련정보    | - 건축 착공신고서중 시방서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7호              | - 법인의 경영, 영업상 비밀(시공기술<br>노하우 등 정보기술 유출우려)  |
| 공사 및 용역<br>시행   | -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<br>- 기존기술, 신공법, 시공실적,<br>내부관리 등에 관한정보<br>- 재직증명서, 경력확인서 등<br>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, 제7호,<br>제8호 | - 법인관련 정보, 특정업체의 정당한<br>이익침해 우려<br>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<br>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<br>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|
| 옥외광고물허가<br>(신고) | - 개인 신상정보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| - 개인정보 보호  |
| 옥외광고사업자<br>관리   | - 개인 신상정보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| - 개인정보 보호  |
| 기간제근로자          | - 개인 신상정보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| - 개인정보 보호  |
| 행정처분            | - 행정처분(이행강제금, 과태료,<br>고발 등) 관련서류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| - 개인정보 보호  |
| 민원신청서           | - 법정 서식민원 중 개인정보<br>(진정, 건의, 요청, 탄원 포함)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| - 개인정보 보호  |

□ **공원녹지과**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 |   | 비공개 근거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| 법률근거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개인신상관리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신상명세서, 봉급 및 수당자료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, 가족사항, 급여 및 수당 내역 등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무상황관리                   | -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정보 중 연차휴가, 병가휴가, 특별휴가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정보 중 연차휴가, 병가휴가, 특별휴가 등에 관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상태나 사생활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|
| 민원사무처리                   | - 민원신청서류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|
| 비밀·보안<br>관련정보            | - 비밀문서 및 보안관련대장<br>- 비밀문서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<br>- 보안진단의 날 운영대장<br>- 비밀열람기록전<br>- 보안교육일지<br>- 비밀 및 대외비 문서<br>- 비밀취급인가자현황<br>- 암호자재현황<br>- 단말기 비밀보호(단말기 취급자)관리대장<br>- 대외비관리기록부<br>- 비밀관리기록부<br>- 전시개인별임무카드 | 법 제9조 제1항 제2호 | - 비밀 및 보안관련 업무전반 관련 자료는 업무 전반 관련 자료는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음                   |
| 비밀·보안<br>관련정보            | - 신용카드발급대장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누출 시 불법 활용 우려   |
| 비밀·보안<br>관련정보            | -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- 예산의 공정한 편성 애로   |
| 기간제 관리                   | -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에 관련 서류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의 신상·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|
| 산림사법                     | - 불법행위 행정처분 사항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|
| 산림소득                     | - 그루매니저 관련 인적사항 등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|
| 산림경영계획<br>(임업후계자)        | - 임업후계자 관련 인적사항 등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|
| 산사태취약지역<br>지정위원회<br>관련정보 | - 회의록, 위원명단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(주민번호, 주소)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|
| 과태료관리                    | - 과태료부과, 과태료 납부독촉, 압류등록 해제 촉탁, 체납자 내역 자료 중 인적사항 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과태료 관련 자료에는 개인정보(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)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|

□ 환경위생과 - 1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공중위생업 허가(신고)변경 업무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중위생업소 영업(변경)신고에 관한 업무</li> <li>- 이(미)용사 면허발급에 관한 업무</li> <li>- 공중위생업소 그린카드제 운영에 관한 사무</li> </ul>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고(허가)를 받으면서 득한 개인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/li> <li>- 이(미)용사 면허증 (재)교부 신청을 받으면서 득한 개인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/li> <li>- 그린카드 업소 신청에 따른 개인(법인의 대표자 포함)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/li> </ul> |
| 대기환경보전관리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장(행정처분대장, 과태료부과징수대장)</li> <li>-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부과</li> <li>- 자동차배출가스행정처분</li> <li>-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부과</li> <li>-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체납자관리</li> <li>-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</li> </ul>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/li> </ul>   |
| 소음진동규제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음진동일반</li> </ul>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/li> </ul>   |
| 수렵면허장발급 및 관리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렵면허신규(갱신)발급</li> <li>-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</li> </ul>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/li> </ul>   |
| 환경개선부담금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세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-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</li> <li>- 체납자 재산 및 주소 정보</li> <li>- 재산압류 대장</li> <li>- 재산압류등록 및 해제</li> </ul>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/li> </ul>   |
| 식중독예방 및 급식시설 관리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</li> </ul>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및 무료급식소, 무신고 집단급식소 대표자(법인의 대표자 포함) 및 민원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/li> </ul>  |
| 식품위생관리, 공중위생관리, 유통관리업 지도점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단멸실 관리업소에 대한 행정처분</li> </ul>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단멸실 대상업소에 대한 개인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/li> <li>- 식품제조업소 생산실적 관리는 개인(법인포함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<br/>(다만,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시행령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)</li> </ul>   |

□ 환경위생과 -2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식품위생관리, 공중위생관리, 유통관리업 지도점검 | - 관허사업제한 대상업소 관리(지방세, 국세 체납업소에 관한 사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지방세, 국세 체납사유로 관허사업제한 요청으로 득한 개인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|
| 식품위생관리, 공중위생관리, 유통관리업 지도점검 | - 식품, 공중, 유통업소 지도점검 관리 계획<br>- 허위·과대 광고 행위 및 부정·불량식품 특별단속에 관한 업무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  | - 관할 업소 지도점검 계획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 |
| 식품위생관리, 공중위생관리, 유통관리업 지도점검 | -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<br>-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, 제6호 | - 관할 업소 지도점검 계획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<br>- 관련업소 대표자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식품위생관리, 공중위생관리, 유통관리업 지도점검 | -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·소송에 관한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4호, 제6호 | -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·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<br>- 관련업소 대표자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|
| 식품위생관리, 공중위생관리, 유통관리업 지도점검 | - 1399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관한 업무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민원신고 업소의 대표자(법인의 대표자 포함) 및 민원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|
| 식품위생관리, 공중위생관리, 유통관리업 지도점검 | - 공중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위생감시원 개인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|
| 식품위생관리, 공중위생관리, 유통관리업 지도점검 | - 영양사, 조리사 및 이용사, 미용사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, 제6호 | - 관할 업소 지도점검 계획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<br>- 면허자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|
| 식품위생관리, 공중위생관리, 유통관리업 지도점검 | - 식품, 공중 관련 업소 과징금, 과태료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9조 제1항 제4호, 제6호  | -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·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<br>- 관련업소 대표자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|

□ 환경위생과 -3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|   | 비공개 근거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| 법률근거  | 비공개 사유   |
| 식품위생업 허가(신고)변경 업무  | - 식품위생업소 영업(변경)신고에 관한 업무<br>-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(변경)신고에 관한 업무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| - 신고(허가)를 받으면서 득한 개인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|
| 식품위생업 허가(신고)변경 업무  | - 영양사·조리사 관련 업무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| - 면허증 (재)교부 신청을 받으면서 득한 개인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|
| 식품위생업 허가(신고)변경 업무  | - 식품제조업소 등급평가 관리  |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식약청 식품제조·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지침 제4장 제15조 제2항 | 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식약청 고시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영업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식품위생업 허가(신고)변경 업무  | - 식품제조업소 품목보고 및 생산실적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, 제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식품제조업소 품목 보고시 득한 개인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br>- 식품제조업소 생산실적 관리는 개인(법인포함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|
| 위생관리업소 표창에 관한 사무   | - 위생관리업소 표창에 관한 사무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| - 표창 대상인 위생관리업소의 대표자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|
| 음식문화개선사업           | - 보조금 지원, 단체관련개인정보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| - 보조금 지원 단체 대표자(법인의 대표자 포함)의 인적사항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|
| 유해화학물질관리           | - 유독물일반<br>- 유독물영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|
| 저수조 청소업            | - 저수조 청소업 등록 및 신고<br>- 저수조 청소업 신규개설, 변경에 따른 결격여부 조회, 신고수리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|
| 환경범죄관리             | - 사건송치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|
|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| - 대장(행정처분대장, 과태료부과징수대장)<br>- 배출부과금관련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|
|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| - 배출시설 행정처분<br>-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<br>- 자율점검업소관련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| - 지도점검 및 행정 처분 내용은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음   |



□ 환경위생과 -4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환경오염물질배출<br>시설인허가관련 | -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(변경)서류<br>-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<br>및 토양오염도 검사관련 서류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, 제7호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<br>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<br>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br>- 법인· 개인의 경영상· 영업상 비밀에<br>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<br>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|
| 환경오염물질배출<br>시설인허가관련 | -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<br>사전신고에 따른 개인정보가<br>포함된 서류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<br>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<br>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|
| 환경행정일반              | - 지도점검관련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5호, 제7호 | - 지도점검 및 행정 처분 내용은<br>기밀사항의 누설방지 등 공정한<br>업무수행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음  |
| 환경행정일반              | - 진정민원관련<br>- 구민자율환경감시원<br>- 체납관리<br>- 환경신문고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<br>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<br>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|

□ 자원순환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    | - 1회용품 위반사업장, 신고자인적사항, 위반자과태료 부과, 과태료납부독촉, 체납자 내역 관련 자료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및 신고자 관련자료(이름, 주소, 연락처)는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|
|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 | -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표(입회자 주민등록번호), 민간인 참석등록부(계좌번호)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표 항목 중 입회자 란의 개인정보(이름)는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|
| 감량의무이행 신고        | - 감량의무이행신고 서류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신청서에는 개인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)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|
| 쓰레기 불법투기         | - 불법투기 신고, 과태료 부과, 과태료 납부독촉, 체납자 내역 관련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및 불법투기자 관련 자료는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|
| 쓰레기종량제 추진        | -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(음식물납부필증 판매소) 신청서류 중 신청인 인적사항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)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신청서에는 개인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)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|
| 음식물자원화 시설        | - 음식물 자원화시설 채무부존재 소송관련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 자료등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 |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   | -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판에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 자료 등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  |
| 폐기물처리업 인허가관련     | - 처리업 (변경)허가 및 (변경)신고서류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, 제7호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<br>- 법인·개인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|
| 폐기물일반            | - 지도점검관련   | 법 제9조 제1항 제5호, 제7호 | - 지도점검 및 행정 처분 내용은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음  |
| 민원사무처리           | - 민원신청서류<br>- 진정민원관련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| 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|

□ 의회사무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|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의회민원      | - 진정서 등 민원신청서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       | - 민원내용,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개인 신상 유추가 가능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|
| 의회 회의록    | - 의원 징계와 관련된 회의록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/ 지방자치법 제72, 89조 | -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및 의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정보의 보호            |
| 의회포상      | - 포상 대상자의 개인정보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       | - 개인 민감정보(경력, 활동사항 등)의 노출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        |

□ 보건행정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|
| 의약업소 관리                    | - 의료분쟁 및 의사 행정처분, 의약업소 허가 및 신고사항,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, 제7호      | - 개인 정보 노출 우려, 법인, 단체, 기관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또는 기관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|
|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               | -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신청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| - 개인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건강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음  |
| 1군 감염병 발생 통보 및 업무 종사의 일시제한 | - 1군 감염병 발생시 개인 및 소속 대표자에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|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| - 개인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건강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음  |
| HIV감염자 관리                  | - 감염자에 관한 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      | - 개인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건강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음  |
| 보건일반                       | - 건강검진 등 신고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건강검진 신고 시 접수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가예방접종사업                   | -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|
| 국가결핵 관리사업                  | - 결핵환자 명단 및 관리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|
| 지역사회 중심재활                  | - 물리치료 대상자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     | - 물리치료 및 재활사업 추진 시 접수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건강증진과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|
| 치매예방<br>관리사업           | - 치매안심센터 등록·관리자 명단<br>및 관리 정보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| -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<br>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희귀질환자<br>의료비 지원사업      | -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류<br>및 재산·소득 조사결과 정보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<br>우려<br>-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관련 업무<br>개인정보노출 우려       |
| 국민건강증진사업               | - 강사계약서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| -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<br>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모자보건사업                 | - 임신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<br>-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의료비<br>지원<br>- 신생아 난청조기진단<br>-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<br>지원사업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<br>모자보건법<br>제3조   | - 개인의 신상·건강상태 등 사생활의<br>비밀  |
| 모자보건사업                 | - 난임부부지원사업<br>-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<br>- 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<br>모자보건법<br>제11조  | - 개인의 신상·건강상태 등 사생활의<br>비밀  |
| 모자보건사업                 | -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<br>지원<br>- 산후조리비 지원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<br>모자보건법<br>제9조의2 | - 개인의 신상·건강상태 등 사생활의<br>비밀  |
| 임산부 및<br>영유아<br>건강관리사업 | - 임신부 및 영유아 등록 대상자<br>- 임신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<br>대상자<br>-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건강상태 등 사생활의<br>비밀  |
| 산모신생아<br>건강관리<br>지원사업  |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<br>대상자 개인에 관한 사항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암환자의료비<br>지원사업         | - 암환자 의료비 지원<br>- 소아암환자 가구 소득,<br>재산조사관련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| -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<br>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신보건                   | -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| - 구청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시<br>접수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<br>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|
| 방문건강관리                 | -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료비지원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| -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시<br>접수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<br>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|
| 지역사회중심<br>금연지원서비스      | - 금연클리닉 등록관리<br>- 금연규제시설물 관리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| - 접수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<br>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구립도서관

|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           |  | 비공개 근거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
| 정보명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목록   | 법률근거  | 비공개 사유  |
| 구립도서관<br>회원관리             | - 자료대출회원증신청서 등<br>구립도서관 회원가입 관련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위원회<br>관련 정보              | -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자료<br>(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,<br>책임은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)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회의록, 심의관련서류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<br>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  |
| 자원봉사 관리                   | - 자원봉사자 가입 및<br>운영관련 서류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복스타트 관리                   | - 복스타트 신청 및 운영관련 서류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독서회 관리                    | - 독서회 회원가입 및 운영관련 서류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문화강좌 관리                   | - 문화강좌 신청 및 운영관련 서류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기간제 관리                    | -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에<br>관련 서류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| 정보시스템<br>유지보수 및<br>통합도서관리 | - 통합도서관리시스템<br>유지보수내역<br>-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설치 및<br>수정,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<br>사항 | 법 제9조 제1항<br>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시스템 구성정보(서버주소, 파일시스템<br>구조, 연계정보 등)에 대한 사항으로<br>공개될 경우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<br>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|
| 사이버보안관리                   | -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성 및<br>보안관련 자료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2호,<br>정보통신보안<br>업무규정<br>제21조의2 | - 정보시스템 구성 및 보안관련 자료가<br>공개될 경우 정보시스템 불법 침해 등<br>보안사고 발생으로 국가안보 및<br>국민생명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|
| CCTV관리                    | - 통제구역(CCTV영상저장장치구역)<br>출입자 명부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<br>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  |

□ 문화예술회관

| 비공개 대상 정보 |                     | 비공개 근거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보명       | 세부목록                | 법률근거          | 비공개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아카데미운영    | - 문화예술아카데미 동아리운영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<br>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아카데미운영    | - 아카데미강사수당, 아카데미운영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<br>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아카데미운영    | - 놀이방운영대장  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<br>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아카데미운영    | - 강사확인제증명발급대장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<br>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대관관리      | -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관련 대장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<br>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
| 자원봉사자관리   | - 자원봉사활동 대장         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- 개인신상정보보호<br>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통장번호 등) |